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64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임호선·염태영·권칠승

조인철 · 안도걸 · 이상식

정준호 · 강경숙 · 이기헌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繁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법률 제 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	②
고를 받은 경우 <u>그 내용</u> 을 검	<u>대통령령으로</u>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상태
를 수리하여야 한다.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